

JP모간코리아트러스트증권투자신탁(주식)

- 증권신고서(투자설명서)

조항	변경 전	변경 후
펀드명	JP 모간 <u>코리아트러스트</u> 증권투자신탁(주식)	JP 모간 <u>한국 오퍼튜니티</u> 증권투자신탁(주식)
제 2 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2007.06.27: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<이하 생략> <신설>	2007.06.27: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<이하 생략> 2017.04.: 펀드명 변경
제2부. 11. 라. 투자신탁간의 전환	이 집합투자기구는 UA 클래스 또는 UC-E 클래스 수익증권에 관하여 아래의"JP 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"의 각 집합투자기구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법 제 232 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① JP 모간 글로벌 전환사채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 ② JP 모간 러시아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③ JP 모간 미국 대표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④ JP 모간 브라질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⑤ JP 모간 유럽 대표 증권투자신탁(UH)(주식-재간접형) ⑥ JP 모간 이머징 국공채 증권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 ⑦ JP 모간 중동&아프리카 증권투자신탁(주식) ⑧ JP 모간 차이나 증권투자신탁(주식) ⑨ JP 모간 천연자원 증권투자신탁(주식) ⑩ JP 모간 <u>코리아트러스트</u> 증권투자신탁(주식)	이 집합투자기구는 UA 클래스 또는 UC-E 클래스 수익증권에 관하여 아래의"JP 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"의 각 집합투자기구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법 제 232 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① JP 모간 글로벌 전환사채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 ② JP 모간 러시아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③ JP 모간 미국 대표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④ JP 모간 브라질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⑤ JP 모간 유럽 대표 증권투자신탁(UH)(주식-재간접형) ⑥ JP 모간 이머징 국공채 증권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 ⑦ JP 모간 중동&아프리카 증권투자신탁(주식) ⑧ JP 모간 차이나 증권투자신탁(주식) ⑨ JP 모간 천연자원 증권투자신탁(주식) ⑩ JP 모간 <u>한국 오퍼튜니티</u> 증권투자신탁(주식)
[붙임] 용어풀이	15. "전환"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"JP 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"라 합니다) 중 하나의 투자신탁의 UA 클래스 또는 UC-E 클래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("전환대상투자신탁")의 UA 클래스 또는 UC-E 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. 가. JP 모간 글로벌 전환사채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 나. JP 모간 러시아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다. JP 모간 미국 대표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라. JP 모간 브라질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마. JP 모간 유럽 대표 증권투자신탁(UH)(주식-재	15. "전환"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"JP 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"라 합니다)중 하나의 투자신탁의 UA 클래스 또는 UC-E 클래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("전환대상투자신탁")의 UA 클래스 또는 UC-E 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. 가. JP 모간 글로벌 전환사채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 나. JP 모간 러시아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다. JP 모간 미국 대표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라. JP 모간 브라질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마. JP 모간 유럽 대표 증권투자신탁(UH)(주식-재

조항	변경 전	변경 후
	<p>간접형)</p> <p>바. JP 모간 이머징 국공채 증권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</p> <p>사. JP 모간 중동&amp;아프리카 증권투자신탁(주식)</p> <p>아. JP 모간 차이나 증권투자신탁(주식)</p> <p>자. JP 모간 천연자원 증권투자신탁(주식)</p> <p>차. JP 모간 <u>코리아트러스트</u> 증권투자신탁(주식)</p>	<p>간접형)</p> <p>바. JP 모간 이머징 국공채 증권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</p> <p>사. JP 모간 중동&amp;아프리카 증권투자신탁(주식)</p> <p>아. JP 모간 차이나 증권투자신탁(주식)</p> <p>자. JP 모간 천연자원 증권투자신탁(주식)</p> <p>차. JP 모간 <u>한국 오퍼튜니티</u> 증권투자신탁(주식)</p>

- 신탁계약

조항	변경 전	변경 후
펀드명	JP 모간 <u>코리아트러스트</u> 증권투자신탁(주식)	JP 모간 <u>한국 오퍼튜니티</u> 증권투자신탁(주식)
제 2 조(용어의 정의)	<p>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5. "투자신탁"이라 함은 JP 모간 <u>코리아트러스트</u> 증권투자신탁(주식)을 말한다.</p> <p>12. "전환"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"JP 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"라 한다) 중 하나의 투자신탁의 UA 클래스 또는 UC-E 클래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(이하 "전환대상투자신탁"이라 한다)의 UA 클래스 또는 UC-E 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가. JP 모간 글로벌 전환사채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</p> <p>나. JP 모간 러시아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 <p>다. JP 모간 미국 대표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 <p>라. JP 모간 브라질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 <p>마. JP 모간 유럽 대표 증권투자신탁(UH)(주식-재간접형)</p> <p>바. JP 모간 이머징 국공채 증권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</p> <p>사. JP 모간 중동&amp;아프리카 증권투자신탁(주식)</p> <p>아. JP 모간 차이나 증권투자신탁(주식)</p> <p>자. JP 모간 천연자원 증권투자신탁(주식)</p> <p>차. JP 모간 <u>코리아트러스트</u> 증권투자신탁(주식)</p>	<p>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5. "투자신탁"이라 함은 JP 모간 <u>한국 오퍼튜니티</u> 증권투자신탁(주식)을 말한다.</p> <p>12. "전환"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(아래 각 목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"JP 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"라 한다) 중 하나의 투자신탁의 UA 클래스 또는 UC-E 클래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(이하 "전환대상투자신탁"이라 한다)의 UA 클래스 또는 UC-E 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가. JP 모간 글로벌 전환사채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</p> <p>나. JP 모간 러시아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 <p>다. JP 모간 미국 대표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 <p>라. JP 모간 브라질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</p> <p>마. JP 모간 유럽 대표 증권투자신탁(UH)(주식-재간접형)</p> <p>바. JP 모간 이머징 국공채 증권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</p> <p>사. JP 모간 중동&amp;아프리카 증권투자신탁(주식)</p> <p>아. JP 모간 차이나 증권투자신탁(주식)</p> <p>자. JP 모간 천연자원 증권투자신탁(주식)</p> <p>차. JP 모간 <u>한국 오퍼튜니티</u> 증권투자신탁(주식)</p>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"JP 모간 <u>코리아트러스트</u> 증권투자신탁(주식)"이라 한다.	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"JP모간 <u>한국 오퍼튜니티</u> 증권투자신탁(주식)"이라 한다.

조항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의2(자투자신탁)	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JP 모간 <u>코리아트러스트</u>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 1. JP 모간 <u>한국 오피튜니티</u>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제25조의4(투자신탁간의 전환)	② 수익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처리한다. 1. JP 모간 <u>코리아트러스트</u>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(15 시 30 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. 이 경우 전환대상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<이하 생략>	② 수익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처리한다. 1. JP 모간 <u>한국 오피튜니티</u>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(15 시 30 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. 이 경우 전환대상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<이하 생략>
부칙(2017.04.)	<신설>	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신탁계약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등록의 완료 및/또는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- 간이투자설명서

조항	변경 전	변경 후
펀드명	JP 모간 <u>코리아트러스트</u>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JP 모간 <u>한국 오피튜니티</u>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- 끝 -